


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

 www.hometax.go.kr ➡ 조회/발급 ➡ 연말정산간소화
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소득·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.



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!

<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>

1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

☞ 특히,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지만 하므로,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

☞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
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

☞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·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.

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

☞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.

☞ 19세 미만(2003.1.1. 이후)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「자녀자료 조회신청」 후 조회 가능합니다.

☞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.

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」 운영

 www.hometax.go.kr ➡ 조회/발급 ➡ 연말정산간소화

>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(예정)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, 홈택스(조회/발급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)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(이용시간 - 08:00~20:00)

> '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'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합니다.

>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 제출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> 다만,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개별 안내 예정임